

인천지방법원 2017. 11. 30 선고 2016나13222(본소), 2016나13239(반소) 판결 [원상회복 및
건물명도등 · 임차권확인 등]

재판경과

인천지방법원 2017. 11. 30 선고 2016나13222(본소), 2016나13239(반소) 판결

인천지방법원 2016. 9. 6 선고 2015가단25432 판결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, 피항소인A

피고(반소원고), 항소인B

피고보조참가인협동조합 C

변론 종결 2017. 11. 9.

판결 선고 2017. 11. 30.

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. 9. 6. 선고 2015가단25432(본소), 2015가단65041(반소) 판결

주 문

1. 피고(반소원고)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본소, 반소를 합하여 피고(반소원고)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가. 본소

피고(반소원고, 이하 '피고'라 한다)는 원고(반소피고, 이하 '원고'라 한다)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, 2015. 1. 5.부터 위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1,000,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
나. 반소

1) 주위적 청구취지

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기재 건물에 관하여 피고를 임차인, 원고를 임대인, 임대차기간 2014. 11. 5.부터 2016. 11. 5.까지, 차임 월 1,000,000원으로 정한 피고의 임차권이 존재함을 확인하고,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위 임차권에 관하여 2014. 10. 2.자 부동산월세계약을 원인으로 한 임차인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며, 원고는 피고에게 21,300,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) 예비적 청구취지

원고는 피고에게 54,365,55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예비적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가. 본소

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.

나. 반소

1) 주위적 항소취지

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.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기재 건물에 관하여 피고를 임차인, 원고를 임대인, 임대차기간 2014. 11. 5.부터 2016. 11. 5.까지, 차임 월 1,000,000원으로 정한 피고의 임차권이 존재함을 확인하고,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위 임차권에 관하여 2014. 10. 2.자 부동산월세계약을 원인으로 한 임차인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며, 원고는 피고에게

20,300,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) 예비적 항소취지

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. 원고는 피고에게 55,285,75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예비적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,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

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를 각 일부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,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박준민

판사김지영

판사류일건

별지